

<p>Issue No. 2019-08 August 2019</p>	<p><b>국제 인권 동향</b> <b>Human Rights</b> <b>Worldwide</b></p>	
--	---	---

**국가인권위원회 소식**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함)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바, 제126차 회기(2019년 7월 1-26일)에서 대한민국 제5차 정부보고서 심의를 위한 ‘쟁점질의목록(List of Issues Prior to Reporting, LoIPR)’을 채택했다.

우리나라 정부가 자유권위원회 정부보고서 심의와 관련하여 2018년 8월 28일 약식보고절차에 동의함에 따라, 당초 2019년 11월 6일 기한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제5차 대한민국 심의 정부보고서는 약식보고절차에 따라 2019년 7월 쟁점질의목록 확정 후 1년 이내(2020년 8월 예정)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쟁점질의목록에는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 및 자유권규약의 이행에 관한 새로운 조치들,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 개인통보 견해들(Views) 이행 절차 마련 여부,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자유권규약위원회 견해의 완전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정보 등 총 17개의 쟁점이 포함되어 있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제126차 회기와 관련하여 웹사이트에 국가인권기구를 위한 안내문(정보노트)를 게시하고, 2019년 5월 13일까지 쟁점질의목록 작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5월 13일 쟁점질의목록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인권위 의견서와 쟁점질의 목록을 비교해보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디지털 성범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가 인권위 의견서에 있으나, 쟁점질의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쟁점질의목록에는 포함되었으나 인권위 의견서에 있지 않은 항목으로는 대테러 방지 대책, 고문 및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형벌, 비자발적 입원시 개인의 견해 존중, 사법부의 부패를 다루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이 포함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고)

인권 NGO 소식	유엔 소식
<p><b>국제앰네스티 체코지부의 "사람책 도서관" 프로젝트</b></p> <p>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체코의 주된 인권문제이다. 집시에 대한 조직적인 차별이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도 심한 편이다.</p> <p>이에 국제앰네스티 체코지부는 2013년부터 6년째 "사람책 도서관"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년에만 이 프로젝트에 900명의 참가자와 254명의 "사람책"이 함께 했다.</p> <p>"사람책 도서관" 프로젝트는 5명의 "사람책"이 참가자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다. 5-6명의 학생들이 그룹을 이루어 20분정도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p> <p>주로 13-17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이따금 인권축제나 행사에 포함되기도 한다. 하지만 인권축제 참가자들은 대부분 다양성의 가치를 이미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가장 효과가 크다고 앰네스티 체코지부의 담당자는 말한다.</p> <p>프로젝트의 가장 큰 성과는 참가자들의 태도 변화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소수자에 대한 특별한 정보를 얻었다기보다 이들에 대한 공감, 이해 능력이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공유한 사례들로 이러한 태도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짐이 입증되었다.</p> <p><a href="http://www.amnesty.org/en/latest/education/2019/08/human-libraries-czech-republic/">http://www.amnesty.org/en/latest/education/2019/08/human-libraries-czech-republic/</a></p>	<p><b>유엔미얀마진상조사단, 젠더기반 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법정의 실현 요구</b></p> <p>유엔미얀마진상조사단 (UN 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Finding Mission on Myanmar)은 8월 22일 새 보고서를 발간하여 미얀마의 군인이 소수민족을 위협하기 위해 성폭력, 젠더기반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p> <p>조사단은 수백 명의 생존자, 목격자와의 인터뷰를 실시했으며, 미얀마 북부의 라카인주에서 성폭력 문제가 특히 심각함을 밝혀냈다. 라카인 주는 2017년 8월부터 로힝야족 소탕작전이 이루어진 곳으로 그 결과 70만 명이 넘는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로 대피한 바 있다.</p> <p>조사단은 이번 보고서에 남성, 소년, 트랜스젠더에 관한 젠더기반 폭력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폭력은 유엔 보고서에서 최초로 다루는 것이다.</p> <p>미얀마 군부는 여성과 소녀를 조직적으로 학살하고, 가임기 여성에 대한 성폭행, 임신한 여성과 아기에 대한 공격을 통해 로힝야족 말살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성폭력은 민간인들을 위협, 처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한 전략의 일부인 것이다.</p> <p>이러한 행위 대부분은 반인류범죄, 대량학살 등으로 국제법상 처벌가능한 범죄이다. 조사단은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2018년 이어 새로운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했다.</p> <p><a href="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4907&amp;LangID=E">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4907&amp;LangID=E</a></p>

## 기 획 특 집

## 행 사 일 정

### 유엔 인권기구 “약식보고절차 (Simplified Reporting Procedure)”의 개요

인권조약이 늘어남에 따라 비준국의 정부보고서 제출부담이 커지고, 실제로 보고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거나 장기간 지연함에 따라 이를 해결할 방편으로 유엔 총회 결의(68/268, 2014년 4월 9일 채택) 에서 약식보고절차를 도입했다.

기존 정규보고절차와 비교하면 약식보고절차에서는 정부의 당사국보고서 제출을 생략한다. 자유권위원회의 예를 들면, 자유권위원회가 쟁점질의목록을 작성하고 당사국에 송부하면 당사국이 자유권위원회의 쟁점질의목록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는데 이 답변서가 보고서로 간주된다. 단, 약식보고절차를 적용하더라도 국가인권기구와 NGO의 역할은 변동이 없다.

약식보고절차가 적용되는 자유권위원회에서는 정규보고절차와 달리 정부보고서가 부재한 상태에서 본심의에서 질의할 쟁점질의목록을 작성해야 하므로, 국가인권기구와 NGO가 제출하는 쟁점질의 목록에 대한 의견서가 매우 긴요하게 활용될 수밖에 없다.

약식보고절차에서는 쟁점질의목록에 대한 답변서가 곧 정부보고서가 되기 때문에, 국가인권기구와 시민사회단체가 제출하는 ‘쟁점질의목록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정부보고서의 작성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약식보고절차를 적용/시범적용한 유엔인권기구: 자유권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장애인권리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고)

### 2019년 8월 유엔 주요회의 일정

날짜	회의	비고
8/5-8/29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99차 회기	
8/26	인권이사회 제42차 회기 사전회의	
8/26-9/20	장애인권리위원회 제22차 회기	

###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제안 및 의견은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담당자 김효정 hjkim5@nhrc.go.kr

[붙임 1] 조약기구의 간소화보고절차(SRP) 적용 및 우리나라와의 관계

조약기구	SRP 도입여부 및 적용대상 범위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SRP적용 선택여부
사회권위원회 (CESCR)	이미 3-4차례 CESCR의 정부보고서 심의를 받은 국가들 중 3개국(불가리아, 뉴질랜드, 스페인)을 선정하여 2016년 시범적용. 시범적용 경험을 평가하여 SRP 도입 여부 및 대상국가 요건 등을 논의할 예정	해당사항 없음 (CESCR의 SRP 도입여부 불투명)
자유권위원회 (HRCtte)	2009년 결정을 통해 SRP를 도입. 2010년에 가이드라인 <sup>1)</sup> 을 채택하고 같은해 11월부터 시범적으로 적용. 당사국의 최초보고서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정기보고서에 대해 당사국의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 일반보고절차에 따라 규약의 모든 조항들에 관한 종합보고서(full report)가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국의 SRP적용 선택을 반려했을 수 있음. 현재까지 40여개국이 SRP적용을 선택.	2019년 제출기한인 제5차보고서 작성시 정부의 SRP적용 선택가능성
인종차별철폐위원회 (CERD)	오랜 기간(보통 10년 이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non-reporting states) 중 SRP적용을 받아들인 3개국(아프가니스탄, 헝가리, 바레인)에 대해 2016-2017년 시범적용	적용대상 아님 (제17-18차통합보고서 제출기한은 2016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	2014년 11월 SRP관련 결정 <sup>2)</sup> 채택. 2015.1.1. 기준, 보고서제출기한을 넘긴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시범적용. 현재까지 5개국에 대해 SRP가 적용됨.	적용대상 아님 (제8차보고서 제출기한은 2015년이었고, 2015년 9월 동보고서를 제출)
고문방지위원회 (CAT)	2007년과 2009년 결정 <sup>3)</sup> 을 통해 2009-2012년 심의대상국들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입된 후 2011년부터 대다수의 당사국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음. 현재 한국을 포함하여 90여개국이 SRP적용을 선택	2016년 6월 정부가 제출한 제3-5차 통합보고서가 SRP에 따라 작성됨.
아동권리위원회 (CRC)	아직 SRP 도입하지 않음	해당사항 없음 (CRC의 SRP 도입여부 불투명)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CMW)	2012년 SRP도입. 현재 34개국이 SRP적용을 선택	미가입
장애인권리위원회 (CRPD)	2013년 SRP를 도입하기로 결정. 2016년 보고서작성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2017년부터 적용. 현재 9개국이 SRP적용을 선택.	2019년 제출기한인 제2-3차 통합보고서 작성시 정부의 SRP적용 선택가능성
강제실종위원회 (CED)	아직 SRP 도입하지 않음	미가입

- 1) Human Rights Committee, CCPR/C/99/4, 29 Septemebr 2010.
- 2) A/70/38, part 2, CEDAW decision 58/II & part 3, decision 59/IV, July & November 2014.
- 3) A/62/44, paras.23-24, 27; 2009-2012년도 시범적용에 대한 고문방지위의 평가는 CAT/C/47/2, 27 September 2011 참조

[붙임 2] 제5차 자유권규약 심의 관련 인권위 의견서와 쟁점질의목록 비교표

4차 최종견해		인권위 의견서	쟁점질의목록(LoIPR)
7	선택의정서 상 구체적 국제 메커니즘 수립 등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국내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약과 선택의정서 상 견해의 국내 이행절차 및 조치 등</li> <li>-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 지명선출 과정 투명성 보장 법률 채택</li> <li>- 기업과 인권 NAP 수립</li> </ul>
9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률 채택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11	기업의 해외 활동에서 인권 보장	기업과 인권	
13	차별금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채택
15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근거한 차별금지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한 권리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 혐오표현 등에 취해진 조치들</li> <li>- 성소수자 법적 보호 강화</li> <li>- 균형법 제92조 6항 폐지 등</li> </ul>
17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성차별 금지	양성 평등
19	가정폭력 및 부부간 피해자 보호	젠더 기반 여성폭력, 가정폭력, 부부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에 대한 폭력</li> <li>-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준수하기 위한 단계</li> </ul>
21	대테러 법률과 시행의 자유권 규약에의 부합	-	대테러 방지 대책
23	사형제 폐지	사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형제 폐지 제2선택의정서</li> <li>- 자살 예방</li> </ul>
25	자살 예방 정책개선	자살	
27	고문과 부당한 처우 관련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고문 행위를 분류하기 위해 채택한 입법 조치 등</li> <li>- 고문 및 학대 혐의 조사를 위한 독립 메커니즘 수립</li> </ul>
29	정신병원 비자발적 입원 시 인권보호 강화	-	비자발적 입원 시 개인의 견해 존중 등
31	군대 내 폭행 걱정 사법처리	군대 내 인권	군대 내 인권침해
3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35	수감 상황 개선	구금시설 내 인권	구금환경 개선 등
37	북한이탈주민 최소 구금 등	-	

	자유권 보장		
39	비호신청인의 자유권 보장	난민과 난민신청자	이주민, 난민, 난민신청자
41	이주근로자 및 강제노동 목적의 인신매매 금지	강제노동 목적의 인신매매	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 채택 - 예술흥행비자(E-6) 규제 조치
43	통신 이용자정보 영장 제도, 감청에 대한 감시제도 도입	사적 통신의 사찰, 감시, 감청	사적 통신의 사찰, 감시, 감청
45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 등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자 석방 및 범죄 기록의 삭제, 대체복무 제공 등
47	명예훼손 징역형 비범죄화 고려 등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49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표현의 자유, 국가보안법 제7조 약화하기 위한 입법 조치
51	정당 해산 비례성원칙 반영	-	
53	평화적 집회 보장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보장	평화로운 집회 - 성소수자의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보장 등
55	공무원 및 실직자의 결사의 자유 보장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동 기본권 보장	공무원, 교사, 실직자 등의 노동 조합 가입 보장 등
57	출생등록제도 마련	보편적 출생등록	보편적 출생등록
			사법부의 부패를 다루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에 관한 정보